

선체 두께측정업체의 지정기준(제4조의2 관련)

1. 시설 및 장비 기준

- 가. 선체두께 측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소를 갖출 것
- 나. 도장된 선체의 두께를 측정할 수 있는 펄스(pulse)반사법 측정장비[탐촉자(探觸子)를 사용하는 다중반사 방식의 디지털 측정장비를 말한다]를 갖출 것

2. 인력 기준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2명 이상 갖출 것

- 가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초음파비파괴검사 분야 기능사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선체두께 측정 업무에 종사하거나 선체두께 측정 관련 현장 실무교육을 받은 사람
- 나.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원으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

3. 업무규정 기준: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갖출 것

- 가. 선체두께 측정 절차에 관한 사항
- 나. 선체두께 측정위치의 선정 및 식별 등 측정준비에 관한 사항
- 다. 선체두께 측정 업무의 감독에 관한 사항
- 라. 선체두께 측정 결과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